

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「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. 10. 4.

담양군의회 의장



1. 조례명 :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심사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 회의록의 외부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, 의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심사위원의 연임 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-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⇒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나.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의 공개 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심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 및 회의록은 지체없이
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다. 기타 띄어쓰기 및 자구 정비

4. 입법예고 기간 : 2023. 10. 4.~10. 10.(7일간)

5. 의견제출

- o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
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
- 전화 : 061-380-3507~8(FAX 061-380-3590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전화, FAX, 직접방문, 우편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□ 의견제출 서식

의견서		
1. 조례안	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2. 의견	관련조문	의견
3. 기타		
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 2023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(전화 :) 성명 (서명 또는 인)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		

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(이하“의원”이라한다)”를 “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국제회의”를 “국제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담양군의회의장(이하“의장”)”을 “담양군의회회의장(이하 “의장”)”으로 한다.

제3조 전단 중 “의회의원”을 “의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심사위원회(이하“심사위원회”)”를 “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2/3이상”을 “3분의 2이상”으로,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 연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3분의2이상”을 “3분의 2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심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 및 회의록은 지체없이 담양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방의회회의장”을 “의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“지방의회”를 “의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징계를”을 “징계를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의회 인터넷”을 “의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공무국외연수보고서(이하“보고서”)”를 “공무국외연

수보고서(이하 “보고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회홈페이지”를 “의회 홈페이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담양군의 회의원(이하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가 적용 하는 공무국외연수의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<u>국제회의</u> 에 참가하는 경우	2. ----- ----- <u>국제회의</u> -----
3. 4. (생략)	3. 4. (현행과 같음)
6. 기타 <u>담양군의회</u>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명에 의하 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	6. --- <u>담양군의회</u> 의장(이하 “의장”----- -----
제3조(허가권자) 제2조 각호의 1 의 규정에 의한 <u>의회의원</u> 의 공 무국외연수는 의장이 허가하며, 이 경우 해당 연수계획서 등에 대하여 미리 담양군의회의원 공 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.	제3조(허가권자) ----- ----- <u>의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4조(심사위원회 설치) ① 공무
국외연수계획을 심사하기 위하
여 의장은 소속의원 및 제2항의
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담양군의
회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
회(이하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
설치·운영해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
이 2/3이상이 되어야하며, 심사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
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
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민
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
임기로 한다.

⑤ ~ ⑦ (생략)

제5조(회의) ① 심사위원회의 회
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
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
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4조(심사위원회 설치) ① ----

----- 심사위원
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 3분의 2이상-----

한 차례 연임-----
-----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5조(회의) ① -----

----- 3분의 2이
상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심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
국외출장계획서 및 회의록은 지
체없이 담양군의회(이하 “의회”
라 한다) 홈페이지에 게시하여
야 한다.

제8조(공무국외연수 제한 등) ①

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연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지방의회가 개회중일 경우. 다만,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.

2. (생략)

3. 공무국외연수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일 경우

② (생략)

제9조(연수계획서 제출) ① (생략)

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연수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10조(연수보고서 제출) ① 공무국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연수보고서(이하 “보고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,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 연

제8조(공무국외연수 제한 등) ①

의장-----

-----.

1. 의회-----.
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----- 징계를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연수계획서 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의회 -----
-----.

제10조(연수보고서 제출) ① ---

--- 공무국외연수보고서(이하 “보고서”-----

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. 다만,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연수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,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결과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보고서를 의회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공개한다.

-----, 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의회 홈페이지
이지 -----
-----.